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203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피고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5. 주식회사 F

6. G 주식회사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권규대

변론 종결2022. 5. 20.

판결 선고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50,000,00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6,512,580원 및 이에 대한 2021. 9. 14.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36,512,580원,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73,863,258원,

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9,986,425원,

라.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1,244,686원,

마.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61,418,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2019. 4. 1.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4. 5. 접수 제20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2019. 4. 1.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4. 5. 접수 제20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9.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E 주식회사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2019. 4. 1.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4. 5. 접수 제20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3분의 2 지분 중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1),
1)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2019. 4. 1.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F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4. 5. 접수 제20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평택시 H지구에 총 249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I 테라스하우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C, D, E, F(이하 총칭하여 '피고 시행사들'이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1. 20. 이 사건 사업 중 1차분 현장(전체 11,729.1m², 39필지 117가구 건축)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각 체결하였고(이후 2016. 9. 30.부터 2017. 10. 23.까지 공사금액을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3. 3. 이 사건 사업 중 2차분 현장(전체 13,101.4m², 11필지 132가구 건축)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체결하였다(이후 2016. 12. 30.부터 2017. 10. 23.까지 공사금액을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2차분 현장에 관한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2차분 현장(피고 C 11동, 피고 D 11동, 피고 E 11동, 피고 F 11동, 1차 기계약된 2차분 1개동 에이타입은 제외, 총 43개동)에 관한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0. 17.부터 2016. 12. 25.까지, 공사대금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급방법: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직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전체 249가구 중 81가구는 2017. 11. 30. 이전에 준공승인을 받았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였다.

마. 피고 시행사들은 2018. 2. 2. 피고 B에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8. 2. 7.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피고 시행사들은 2018. 2. 9.

준공기일을 지키지 않아 기존 도급계약에 대하여 해지 통지하였다고 하면서, 2018. 2. 20.까지 공사현장을 피고 시행사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8. 2. 12.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완공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피고는 2019. 4. 5.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 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제168조), 이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제292조 제1항),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8. 7. 3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56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8. 피고 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 B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150,000,000원의 채권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확정되어 원고의 채권 150,000,000원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된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사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8.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8. 7.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 부분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1,146,512,58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장 및 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5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86,512,580원(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1,146,512,580원에서 지급 받은 5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6,512,580원 중 지급을 구할 이익이 없는 150,000,000원을 제외한 돈) 및 위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7. 5. 30.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6.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2018. 3.까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 시행사들은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2018. 3.경 피고 C에게 166,181,830원의, 피고 D에게 248,500,000원의, 피고 E에게 39,422,460원의, 피고 F에게 154,286,615원의 각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 시행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또는 직불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지급요청액에 추가 하도급공사대금 28,121,675원을 안분하여 더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166,181,830	7,681,428	173,863,258
피고 D	248,500,000	11,486,425	259,986,425
피고 E	39,422,460	1,822,226	41,244,686
피고 F	154,286,615	7,131,596	161,418,211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시행사들은 2017. 4. 20.경 피고 B에게 "피고 시행사들은 피고 B이 각 협력업체와 공사금액(하도급계약 범위 이내)에 대하여 협의 후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 요청시 피고 B과 협의하여 직불할 수 있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대금 직불 동의 신청시 사전에 피고 시행사들과 협의하여 신청할 것)."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2017. 4. 20.경 하수급업체들에게 "피고 시행사들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승인이 되어 첨부와 같이 양식(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업체별로 작성하시어 피고 B에 제출하여 주시는 대로 피고 시행사들의 날인받아 즉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일부 하수급업체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기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양식에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18. 3. 12. 피고 C에게 166,181,830원의, 피고 E에게 39,422,460원의, 피고 F에게 154,286,615원의 각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2018. 3. 13. 피고 D에게 248,50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위 피고 시행사들의 공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시행사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을 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양식에는 '발주자', '도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있는데, 갑 제13호증으로 제출된 각 동의서에는 피고 시행사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위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양식에 따라 피고 시행사들에게 하도급 직불 동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시행사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 시행사들과 피고 B 내지 원고와 사이에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피고 시행사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3) 이 준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17. 5. 30.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B이 2021. 3. 3.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금액은 1,206,855,349원, 정산금액은 1,146,512,580원(공정율 95%), 지급금액은 510,000,000원, 잔액(미지급금액)은 636,512,580원이고, 원고의 채권금액과 피고 B의 기업회생절차시 회생채권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피고 B의 공사비 지급 무능력으로 계산서가 미발행되고, 공사비 정산문제로 회생채권에 누락되었을 뿐,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 총 잔액이 상기와 같음을 정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636,512,58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했다고 인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액 636,512,580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원고의 채권액 15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2018. 3.경 피고 시행사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고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역시 위 직접 지급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시공한 부분 및 미지급 기성금 횟수와 액수를 특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 시행사들은 준공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2. 9. 피고 B에 기존 도급계약에 대하여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를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급요청 이후 추가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시행사들에게 위 지급요청금액에 추가 하도급공사대금을 더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시행사들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할 당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시행사들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시행사들의 피고 B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 시행사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라. 직불 약정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청구

1) 원고는, 피고 시행사들이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D가 2017. 9. 6. 원고에게 평택하우스 J호를 대금 248,5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작성해 줌으로써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가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가정적 판단(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시행사들은 원고의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직불 합의가 있었다는 2017. 4.경, 원고가 피고 시행사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2018. 3.경 또는 피고 시행사들이 직불 약정을 하였다는 2017. 9.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시행사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부합되어 있고 그 중 하도급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음에도, 피고 시행사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미지급된 하도급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시행사들에 대하여 위 3.의 가.항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시행사들은 피고 B과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B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이행하여 급부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B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시행사들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시행사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고 G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시행사들과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G은 피고 시행사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50,000,00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승온

판사양소영

판사오정훈

별지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추가 하도급공사대금 28,121,675원 × (각 피고 시행사별 지급요청액 / 피고 시행사들 전체 지급요청액 608,390,905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단, 피고 C에 대한 안분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3) 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과 같다.